

광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69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D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2195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12. 9. 24. 체결한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2년 제2725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을 14,233,7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233,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자재공급 및 주식회사 E의 일부 변제

원고는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2. 9. 30.경까지 E에 광주 북구 G 및 H 건설현장에 관하여

56,612,380원 상당의 철물 등 건축자재를 공급판매했는데, E이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E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E이 원고에게

건축자재대금 47,463,78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조서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위 사건 이후 E은 원고에게 건축자재대금으로 2014. 3. 31. 15,230,000원, 2014. 7. 4.

18,000,000원을 각 변제하여 원고의 E에 대한 미지급 건축자재대금은 14,233,780원(=

47,463,780원 - 15,230,000원 - 18,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나. E의 공정증서 작성 및 피고의 강제집행실시

피고는 E에 대하여 전남 무안군 I 저수지 건설현장 관련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E은 2012. 9. 24. 피고에게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2년 제2725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채420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5. E의 무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에 대한 건축자재대금 채권자인데, 무자력 상태인 E이 기존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무안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얻은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의 원인이 된 E과 피고의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E에 대하여 원본 14,233,780원 상당의 미지급 건축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E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 1)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3. 12. 31. 폐업을 하였고 목포세무서에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E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으로 인하여 E의 무자력이 초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일을 전후하여 E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과세표준 매출액 276,717,864원, 매입액 222,587,247원,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표준 매출액 167,681,000원, 매입액 157,339,500원,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과세표준 매출액 365,185,453원, 매입액 176,524,922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E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거나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와 E의 폐업일까지는 약 1년 2개월의 기간차이가 있으므로 E이 결과적으로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자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

③ E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국세채무는 2014. 1. 9.경 과세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E의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④ E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에게 총 215,18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바,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에 E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E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위 공사대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호, 판사 송인경, 판사 김진만